

군산시 공고 제2019-414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4일

군 산 시 장 직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군산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 나.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관광안내소 설치 및 지원,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 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목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다. 관광 홍보 기념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광 진흥 및 홍보의 체계적 운영 도모
- 라. 군산사랑상품권을 관광 사업 또는 축제(행사)등에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관광사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군산시관광협의회(안 제2장)

- 1) 군산시 관광협의회 명칭변경 및 구성원에 관한 규정 삭제

나. 관광진흥자문위원회(안 제3장)

- 1)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다. 관광 및 축제 홍보 지원(안 제4장)

- 1) 조례(안) 일부 제정으로 제12조부터 20조항까지 규정 변경
- 2) 관광홍보 기념품 및 군산사랑 상품권 제공 근거로 제24조 규정 신설

라. 관광사업 보조금(안 제5장)

- 1) 조례(안) 일부 제정으로 제25조부터 27조항까지 규정 변경

마.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안 제6장)

- 1) 관광안내소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바. 관광진흥업무의 위탁(안 제7장)

- 1) 관광업무의 위탁 대상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군산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전화 : 454-3304, FAX : 063-454-33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축제계
전화 063-454-33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를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군산시관광진흥협의회”를 “군산관광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산관광진흥협의회”를 “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산관광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앞에 “제3장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삽입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위원의 임기)”를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관광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중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로, “때에는 부위원장이”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회의 및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1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장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앞에 “제3장 관광 및 축제 홍보 지원”을 삭제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관광 및 축제 홍보 지원”을 삽입한다.

제20조(중전의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4장 관광사업 보조금”을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5조로 한다.

제4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시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4. 시 각종 축제(행사) 참가자 또는 관련 대회 시상자에 대한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5. 스탬프투어 완주자에 대한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앞에 “제5장 관광사업 보조금”을 삽입한다.

제6장(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제28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30조(안내소의 기능)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국인 대상지역 관광홍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4.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제31조(안내소의 운영)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로 하되, 관광안내원 근무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리를 위
하여 안내소별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제3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
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업무의 일부 또는 전
부를 관광 관련 개인·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위탁대상 업무) ① 제3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광역 순환관광버스 운영

-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 추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③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 여행업체를 말한다.
5.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항제1호 ----- ----- ----- 5. ----- “법” ----- -----

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6. ~ 10. (생략)

제2장 군산시관광진흥협의회

제4조(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광진흥과 관련하여

 -----.

6. ~ 10. (현행과 같음)

제2장 군산시관광협의회

제4조(설치) ① -----

----- 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산시관광협의회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은 관광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 및 학계, 관광업계 언론계 등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 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장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관광국장으로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

<신 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 경우에는 -----.

③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
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장 관광 및 축제 홍보 지원

제12조 (생 략)

제13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① 제12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6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① 제15조-----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여행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②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설>

제16조 (생략)

제17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대상) 제1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18조 ~ 제20조 (생략)

제4장 관광사업 보조금

제18조 ~ 제20조 (생략)

제21조 (생략)

<신설>

5. 제15조제1항제1호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8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제17조-----

--.

1. ~ 3. (현행과 같음)

제4장 관광 및 축제 홍보 지원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20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대상) 제19조-----

-----.

1. · 2. (현행과 같음)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25조 ~ 제27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35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4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 2.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시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4. 시 각종 축제(행사) 참가자 또는 관련 대회 시상자에 대한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5. 스탬프투어 완주자에 대한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관광사업 보조금

제6장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제28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치·운영할 수 있다.

제2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30조(안내소의 기능)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내·외국인 대상지역 관광홍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 3.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 4.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신 설>

제31조(안내소의 운영)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관광안내원 근무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리를 위하여 안내소별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장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신 설>

제3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신 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개인·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위탁대상 업무) ① 제3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광역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 추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신 설>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산시 공고 제2019-414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4일

군 산 시 장 직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맞춰 관련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일부개정으므로 규칙 제2조부터 제6조항까지 규정 변경

3. 의견제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전화 : 454-3304, FAX : 063-454-33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축제계
 전화 063-454-33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참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1항제2호”를 “제15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1항제2호”를 “제15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여행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FAX		

□ 관광객 유치실적

관광유형	관광기간	방문객수		주요 방문지	인솔자	
		내국인	외국인		성명	연락처

□ 국제선교통편 이용실적(외국인관광객 유치시 작성)

관광객 국적	인원	입국			출국		
		출발일 (출발장소)	입국일 (입국장소)	교통편명칭	예정일	출국장소	교통편명칭

□ 보상금 신청내역

지급신청액	일금	원(W 원)		
산출내역			원 × 명 × 박	
			원 × 명 × 박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단체관광객 방문 결과(별지 제2-1호서식) 1부.
	2. 여행자 명단(별지 제2-2호서식) 및 관광지 방문 사진첩 1부.
	3. 여행자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영업보증서 사본 1부.
	4. 숙박확인서(별지 제2-3호서식) 1부. (숙박관광에 한함)
	5. 수학여행단 유치 확인서(별지 제2-4호서식) 1부. (수학여행단 유치에 한함)
	6.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제2-5호서식) 1부. (당일관광에 한함)
	7.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 1부. (당일관광에 한함)
	8. 승선(탑승)확인서 1부. (국제선교통편 이용에 한함)
	9. 통장 사본 1부.
※ 공지사항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사업계획서

신청인

여행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락처	FAX		

관광상품 개발 계획

관광상품명	관광기간	관광코스	군산 체류일정	
			체류기간	방문지역
			박 일	
모객국가	모객인원	홍보 계획		
		홍보지역	홍보매체	홍보기간
	명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을 개발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기획서 1부. 2.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기준) 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u>제12조제1항제1호</u>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조례 <u>제12조제1항제2호</u>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③ 조례 <u>제12조제1항제3호</u>에 대한 지원은 10명 이상 유치한 경우를 말하며, 1명당 5천원을 지급한다.</p> <p>④ (생략)</p>	<p>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기준) ① ----- ----- - <u>제15조제1항제1호</u>----- -----.</p> <p>② -- <u>제15조제1항제2호</u>----- -----.</p> <p>③ -- <u>제15조제1항제3호</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신청) 조례 <u>제12조제1항제1호</u>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시작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관광객 유치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관광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지원신청) --- <u>제15조제1항제1호</u>----- ----- ----- ----- ----- ----- ----- ----- -----.</p>
<p>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조</p>	<p>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p>

레 제12조제1항제1호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5조(지원조건)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또는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 또는 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정한 조건이란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람하며(필수),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 또는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군산시 농촌 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택 1)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③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하며(필수),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 중

- 제15조제1항제1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조건) ① --- 제15조제1항제1호-----

-----.

② -- 제15조제1항제2호-----

-----.

③ -- 제15조제1항제3호-----

한 가지 이상(택 1)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제6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
발 지원) 조례 제16조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

제6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
발 지원) --- 제19조-----

-----.

1. ~ 4.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9 - 37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05-394(2005.05.21.)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3월 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소룡동 1662번지(군산2 국가산업단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공단3폐기물처리장)사업

나. 명 칭 : 폐기물창고 및 부대시설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시설결정 면적(m ²)	금 회 실 시 계 획		비고
			부지면적(m ²)	연면적(m ²)	
폐기물 처리시설	공단3 폐기물처리장	32,548	32,548	11,813.83 (증 2,602.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엔아이티

나. 주 소 : 군산시 서해로 259(소룡동 1662)

5. 사업기간 : 2005. 05. 21. ~ 2019. 01. 28.

6.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19 - 392호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같은법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군산동산중 이전 신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벌칙)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3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지곡동 3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사업
 - 나. 명 칭 : 군산동산중 이전 신축공사
3.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교육감
4. 출입할 토지의 구역 : 군산시 지곡동 333번지 일원
5.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측량 및 지반지질 조사, 장애물제거 등
6. 출 입 자 : 증표 및 허가증 소지자
7. 출입기간 : 2019. 03. 04. ~ 조사완료시까지
8. 공고기간 : 2019. 03. 01. ~ 2019. 03. 29.
9. 기타
 - 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 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 나. 측량·조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다. 토지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의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10. 문의처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

(☎063-239-3673)

○ 출입할 토지의 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1	군산시 지곡동	329	1	전	3203	518.5	고병구	군산시 지곡동 329-1	
2	군산시 지곡동	330		전	1574	673.1	고병구	군산시 지곡동 329-1	
3	군산시 지곡동	330	2	전	575	554.8	이성남	군산시 하나운로 48, 206/901(나운동, 롯데3차)	
4	군산시 지곡동	331	1	전	791	766.4	이성남	군산시 하나운로 48, 206/901(나운동, 롯데3차)	
5	군산시 지곡동	332		전	1527	1446.9	강춘문	군산시 지곡동 79	
6	군산시 지곡동	332	1	답	1243	97.3	이미량	군산시 경암동 643-12	
7	군산시 지곡동	333		답	764	758.9	윤혜정	군산시 구암동 65 현대@ 109/1205	
8	군산시 지곡동	334		전	602	600.1	고태선, 김용배	고태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03 유진청하@ A/402 김용배: 군산시 오룡동 832-44	
9	군산시 지곡동	334	1	전	595	588.6	고태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03 유진청하@ A/402	
10	군산시 지곡동	334	3	전	1292	1236.5	김시중	군산시 서흥남동 817-2	
11	군산시 지곡동	335		전	1818	235.1	차판순	군산시 지곡동 쌍용예기@ 103/101	
12	군산시 지곡동	336	3	유	1210	1069.7	김미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35, 101호(하대원동 뉴월드 빌라)	
13	군산시 지곡동	337	3	유	1279	935.8	농수산부		
14	군산시 지곡동	338	3	유	1659	438.6	농수산부		
15	군산시 지곡동	340		유	2367	1800	농수산부		
16	군산시 지곡동	341		유	559	559	구정심	군산시 신흥리 174	
17	군산시 지곡동	342		유	982	956.4	농수산부		
18	군산시 지곡동	342	1	답	1511	1062.3	강유성	충북 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182-19	
19	군산시 지곡동	343		유	466	315.1	농수산부		
20	군산시 지곡동	344		답	453	200.5	양미현	군산시 축동안길 37, 103/1407(수송동 수송제일@)	
21	군산시 지곡동	344	1	답	436	145	이미량	군산시 경암동 643-12	
22	군산시 지곡동	산92		임	3074	709	최규송	군산시 삼학동 271-8	

군산시 공고 제2019-428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군산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포기각서 제출로 변경등록 미실시한 소재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9. 2. 28.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2. 28. ~ 2019. 3. 27.
2. 공고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
3. 송달대상

등록번호 (등록번호판)	기구 명칭	기구 종류	내용	비고
12-01-2013-0007 (75-MB-1292)	오형호	모터보트(선외기)	등록 직권말소	등록인의 소유권포기

4. 송달내용

- 상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현소유자(사용자)는 본 공고 기간 만료시까지 의견 제출 및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직권말소 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항만해양과(063-454-2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